

서울특별시 마포구민 휴양소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수정안

의안 번호	25-131관련
----------	---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4. 10. 23.

발의자 : 행정건설위원장

1. 수정이유

마포구민 휴양소 이용대상 및 우선 이용자를 보다 명확히 하고, 휴양소 이용의 제한사항 발생 시 즉시 알리도록 하는 등 운영·관리에 관한 사항을 실효성있게 변경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마포구민 휴양소의 이용대상 및 우선 이용(안 제5조)

나. 마포구민 휴양소의 이용 제한(안 제10조)

다.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(안 제13조)

라.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함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민 휴양소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민 휴양소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5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 이용료 기준 중 “공적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”를 “공적이 있는 자”로 한다

제5조제2항 “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휴양소의 이용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”를 “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휴양소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”로 한다

제10조제2항 중 “휴양소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”를 “휴양소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,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적절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”로 한다

제13조제4항제1호 “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”을 “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2명”으로 한다.

수정안조문대비표

현 행	수 정 안
제5조(이용대상 및 우선 이용) ① 휴양소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마포구민 2. 구청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등의 공적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3. 마포구 생활주민 4. 그 밖에 휴양소 이용을 희망하는 다른 지역 주민·단체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휴양소의 이용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.	제5조(이용대상 및 우선 이용) ① 휴양소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----- 2. 구청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등의 공적이 있는 자 3. ----- 4. -----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휴양소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.
제10조(이용 제한) ① (생 략)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소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	제10조(이용 제한) ① (현행과 같음)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소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,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적절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.
제13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, ②, ③ (생 략)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 1.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2. (생 략) 3. (생 략)	제13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, ②, ③ (현행과 같음)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 1.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2명 2. (현행과 같음) 3. (현행과 같음)

별표 1

구 분	이 용 료(※ 부가가치세 포함)				기 준 인 원	비 고
	마포구민, 마포구 생활주민, 구청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등의 공적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		다른지 역 주민			
	주중	주말/ 휴일	주중	주말 / 휴일		

별표 1

구분	이 용 료(※ 부가가치세 포함)				기준인원	비고
	마포구민, 마포구 생활주민, 구청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등의 공적이 있는 자		다른지 역 주민			
	주중	주말/ 휴일	주중	주말 / 휴일		